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국회의원 명시〉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7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국회의원 명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래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국회의원 명시

-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회의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5. 국회의원</u>
<u>5.</u> (생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자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법령의 공익신고 대상기관

관련법령	공익신고 대상기관(대상자)
법 제6조제1호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법 제6조제2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법 제6조제3호	수사기관
법 제6조제4호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6조제5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국회의원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그런데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게는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국회의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역구 및 정책 현안 등과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고, 공익신고를 입법 발의, 정책 개선, 감사 요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기도 용이하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후속조치에 대한 감시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국회의원은 같은 법 시행령에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신고 대상기관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거나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입법 분야가 아니므로, 다른 대상기관과 달리 국회의원만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근거가 미약함.

□ 다만, 국회의원은 행정·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신고를 접수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¹⁾은 국회의원도 공익신고를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받은 경우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를 보내고,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국회의원을 법률이 정하는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명시하는 것은 공익신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법으로 보이며, 법률안 심의 시 신고 후 처리 절차 규율 여부 및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할 필요가 있겠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대상기관임을 확인하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며, 국회의원이 법률상 공익신고 기관으로 상향 규정되면 시행령 상의 공익신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7